

자동차 기타정보											
(이 항목은 매수인이 자동차 가격조사·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)											
	항 목								가격조사·산정액		
수리필요	외장	☐ 양호	☐ 불량	내장		☐ 양호	☐ 불량	만원			
	광택	☐ 양호	☐ 불량	룸 크리닝		☐ 양호	☐ 불량				
	휠	☐ 양호	☐ 불량	운전석	☐ 전	☐ 후 / 동반석	☐ 전			☐ 후 /	☐ 응급
	타이어	☐ 양호	☐ 불량	운전석	☐ 전	☐ 후 / 동반석	☐ 전			☐ 후 /	☐ 응급
	유리	☐ 양호	☐ 불량								
기본품목	보유상태	☐ 있음	☐ 없음	(☐ 사용설명서 ☐ 안전삼각대 ☐ 잭 ☐ 스페너)							
최종 가격조사·산정 금액 만원											
이 가격조사·산정가격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바탕으로 한 기준가격과 (☐ 기술사회, ☐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) 기준서를 적용하였음											
⑮ 특 기 사 항 및 점검자의 의견	성능·상태점검자	비급속 또는 탈부차 가능 부품은 점검사항에서 제외되며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, 도색은 있을 수 있음. 엔진,미션, 조향장치는 고장코드없는 소음, 진동, 냄새, 충격에 대하여 보증불가, FRP점검대상제외									
	가격조사·산정자										
유의사항											
※ 중고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											
1. ○ 자동차 매매업자는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(가격조사·산정 부분 제외)에 기재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 ○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여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자동차의 실제성능·상태가 다른 경우, 자동차매매업자는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,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. (매수인이 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별도로 배상받는 경우는 제외) ○ 자동차인도일 부터 보증기간은 (30)일, 보증거리는 (2000)킬로미터로 합니다. (보증기간은 30일 이상,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,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) ○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성능·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때 현행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(국토교통부 고시)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. 동 보증범위는 ‘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’(국토교통부 고시)에 따르며,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○ 자동차의 리콜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(www.car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○ 자동차365(www.car365.go.kr)에서 실매물 조회 및 정비비역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- 자동차365 > 자동차 실매물검색 > 차량번호 입력 - 자동차365 > 자동차이 이력조회 > 매매용차량조회 > 자동차등록번호 검색 2. 중고자동차의 구조·장치 등의 성능·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,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 80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 3. 성능·상태점검자(자동차경비업자)가 거짓으로 성능·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											